

수원지방법원 2020. 11. 13 선고 2020나72294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0. 11. 13 선고 2020나72294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5. 27 선고 2019가단1033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B

변론종결 2020. 9. 11.

판결 선고 2020. 11. 13.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5. 27. 선고 2019가단1033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 체결 또는 근로제공 여부를 비롯하여 근로기간 내지 임금지급에 관한 약정 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한다는 원고의 주장 또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윤희찬

판사김선숙

판사서동민